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과 함께 병행하여 일반직과 연구직의 정수를 조정하고,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된 전국(장애인)체전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3) : 정원변동 없음
 - 1) 일반직 계 : 1,755명 → 1,754명(△1명)
 - 5급 : 90명 → 91명(+1명)
 - 6급 이하 : 1,646명 → 1,644명(△2명)
 - 2) 연구직 계 : 5명 → 6명(+1명)
 - 연구사 : 5명 → 6명(+1명)
- 한시정원표 조정
 -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: 2021. 5. 31. → 2022. 5. 31.(1년 연장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제24조, 제28조, 제29조 및 제30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 - 행정구역 조정·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과 전국체전 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안으로,
- 검토 결과,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근거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 수반이 없으며,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판단됨.